

2023년도 제1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24.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7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38건(안건번호 제2023-102139호~10537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02139호~102140호(순번 1번~2번)는 타인의 출판물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이용의 목적과 성격 및 이러한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02141호(순번 3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02142호(순번 4번)는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02143호(순번 5번)는 카페에 게시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

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02144호~102152호(순번 6번~14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02153호~102192호(순번 15번~54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102193호~105376호(순번 55번~3238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5,36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7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182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4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503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 내지 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출판 불법복제물 총 2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만화 '♣♣♣♣'와 '☆☆☆'의 특정 회차의 일부 장면을 이미지 형태로 게시하여 소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출판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으나 이용된 이미지 수가 원저작물의 회차별 페이지당 이미지수를 고려하면 소량에 불과하고, 글로써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원저작물인 만화를 대체할 만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따라서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이용의 목적과 성격 및 이러한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2번 만화의 일부를 이용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어떤 성격의 블로그인지 확인바람.

- 김선화 선임: (자료를 제시하며)블로그 자체는 개인의 일상이나 영화, 만화 등에 관한 이슈나 리뷰 등을 기재하고 있음.

- A 위원: 이런 만화 소개 및 요약글이 대부분인 사이트인 것은 아닌지?

- 김선화 선임: (자료를 제시하며)두 블로그 모두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인 글이 대다수이고,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도 요약 외에 다양한 글을 올리고 있음.

- B 위원: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고, 영리적 목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거 같음. 상습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취미 목적이 강해 보이고 합법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비중과 그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 이용된 부분의 원저작물 대비 비중을 알 수 있는지?

- 김선화 선임: 페이지 단위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한 페이지 안에서도 말풍선 단위 혹은 여러컷 중 한두컷 단위로 캡처하여 이용하였고, 만화 컷이라는 게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명확하게 몇 퍼센트를 이용하였다고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원저작물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살펴볼때(자료를 제시함), 원저작물 대비 이용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A 위원: 순번 2번은 이용된 이미지가 많아 조금 애매함.
- B 위원: 팬심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여 이 정도까지는 시정권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함. 다만, 이러한 게시물이 더 많아진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2번을 부결하겠음.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만화 불법복제물 총 2건을 게시한 사안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 정식 번역 출간되어 현재 연재중인 일본 만화의 단행본 한 권 분량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번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만화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을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2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는 '★★★★'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온라인 서비스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

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4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 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원천 사이트는 해당 저작물의 전체 회차를 꾸준히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결에 동의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에서 제공 중인 방송 불법 복제물 총 24건임.

해당 저작물은 현재 국내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서비스중인 사안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5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을 가결하겠습니다.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 내지 1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 등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0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6번 내지 14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최근 링크 안전 관련해서는 가결하지 않는 예외 사례가 있는지?
- 김선화 선임: 대법원 판례 이후에는 불법복제물의 목록을 게시하고 이를 전송·판매하는 정황 등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기준으로 가결되었음.
- B 위원: '▲▲▲▲'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리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같은 사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지 고민이 됨.
- A 위원: 동네 시장도 시장으로 판단해야 함.
- B 위원: 본인이 살지 않는 지역의 매물은 검색은 되지만 채팅을 할 수 없어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안전들은 전국 또는 장소의 구매를 받지 않고 유포되는 사안인데 반해, 해당 거래는 국지적 범위로 일어나는 거래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정권고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임.
- 김선화 선임: 권리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도 가입한 회원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제한은 있음.
- A 위원: 물리적 거리를 설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B 위원: 저작권 침해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다른 사안

에 비하면 더 작은 영역으로 보이므로, 향후 기회가 된다면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 내지 14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번 내지 5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5번 내지 54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이전에 가결해왔던 안건들과 동일한 사안으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보임.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5번 내지 54번에 대해 시정권 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5번 내지 323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5,364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디 아이돌'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0번은 드라마 '디 아이돌'로, 미국에서 2023. 6. 4.부터 방영된 드라마의 4화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드라마 '사냥개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1번은 드라마 '사냥개들'임. 2023. 6. 9.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중인 드라마 8부작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51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임. 2023. 7. 12.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 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바로보기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55번부터 3238번까지 총 5,364개의 심의 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음악,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5번 내지 323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2139호~102140호(순번 1번~2번)에 대해 부

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102141호~105376호(순번 3번~3238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7.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